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3144

발의연월일: 2024. 8. 23.

발 의 자:남인순・이기헌・허성무

염태영 • 이병진 • 이재관

윤종군 • 진선미 • 문진석

신정훈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매인으로 하여금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할 때 전자거 래나 우편판매의 방법으로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무인으로 운영되는 상점이 늘어나면서 무인점포에서 자동판매기를 활용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무인점포는 연령에 관계없이 출입이 가능한 장소인 경우가 많으며, 설령 '19세 미만 출입금지' 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출입객들의 나이를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미성년자가 무인점포를통해 담배를 구입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소매인으로 하여금 무인점포에서 담배를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5항 및 제17조제2항제1호의2 신설).

법률 제 호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소매인은 영업장 내 자동판매기를 갖추어서 무인(無人)으로 영업하는 다중이용업소(이하 이 법에서 "무인점포"라 한다)에서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2조제5항을 위반하여 무인점포에서 담배를 판매한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담배의 판매 및 무인점포 내 담배 판매에 대한 영업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5항 및 제17조제2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담배를 판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담배의 판매) ① ~ ④	제12조(담배의 판매) ① ~ ④		
(생 략)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⑤ 소매인은 영업장 내 자동판		
	매기를 갖추어서 무인(無人)으		
	로 영업하는 다중이용업소(이		
	하 이 법에서 "무인점포"라 한		
	다)에서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u>아니된다.</u>		
제17조(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	제17조(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매	2		
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			
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소			
매인이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로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			
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			
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처분			

을 면제할 수 있다.

1. (생략)

<u><신 설></u>

2. ~ 8. (생 략)

③ (생 략)

1. (현행과 같음)

 1의2.
 제12조제5항을 위반하여

 무인점포에서 담배를 판매한

 경우

2. ~ 8.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